

울산지방법원 2022. 7. 14 선고 2020가단1216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세광

담당변호사 이민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

변 론 종 결 2022. 4. 21.

판 결 선 고 2022. 7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2018. 6. 18. 체결한 1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, 피고는 C의 아들이다.

나. 원고는 2019. 5. 21. C, D를 상대로 이 법원에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9. 9. 27. “C,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11. 29.부터 2019. 7. 5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(울산지방법원 2019가단6286호), 2019. 11. 13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 한다).

다. 피고는 2018. 6. 18. 경주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2020. 10. 16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2. 3. 23. 이를 취하하였으나,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원고는,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신축비용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고, 그와 같은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, C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거나, 그럼에도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대금의 지급채무를 면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판사 이현정